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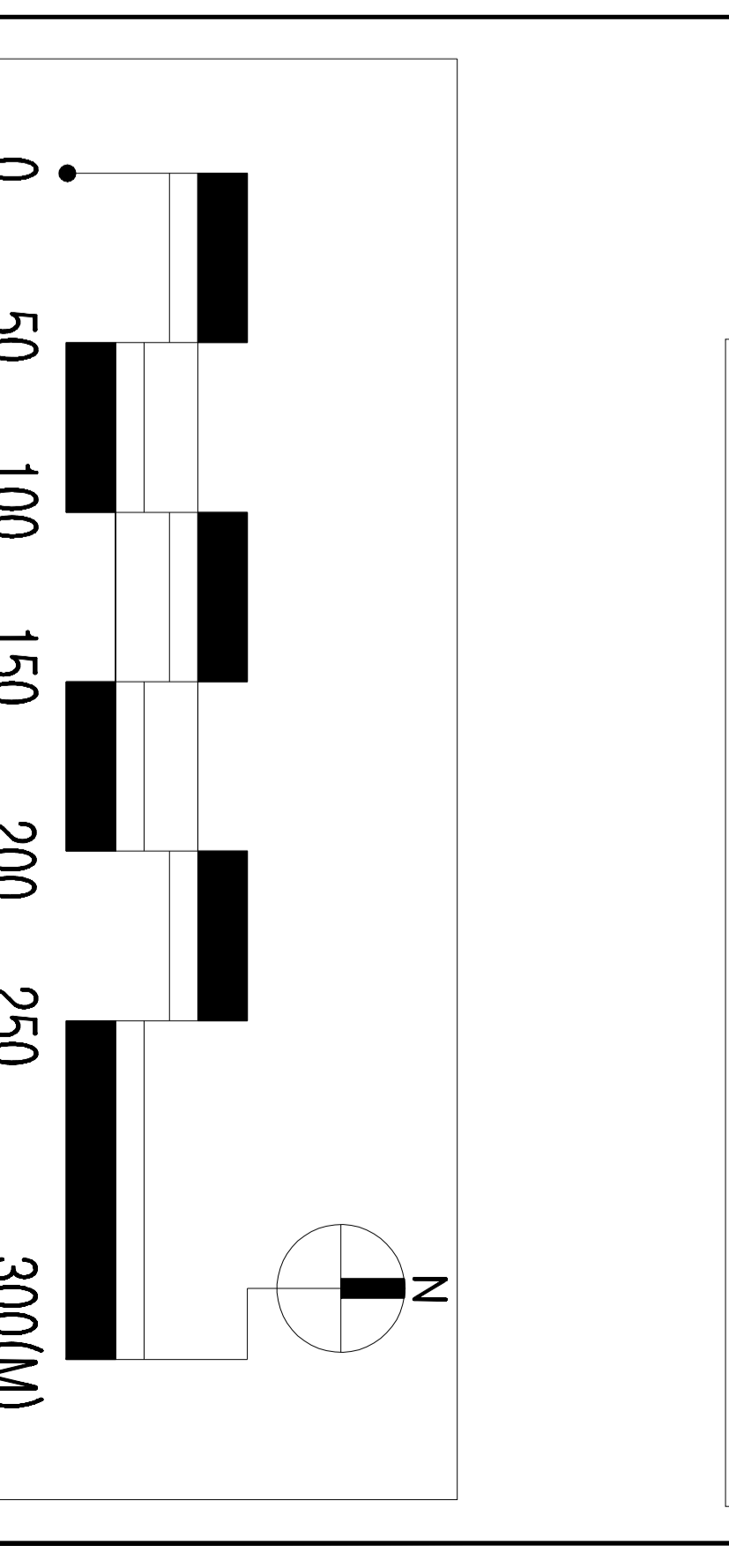
원당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

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제도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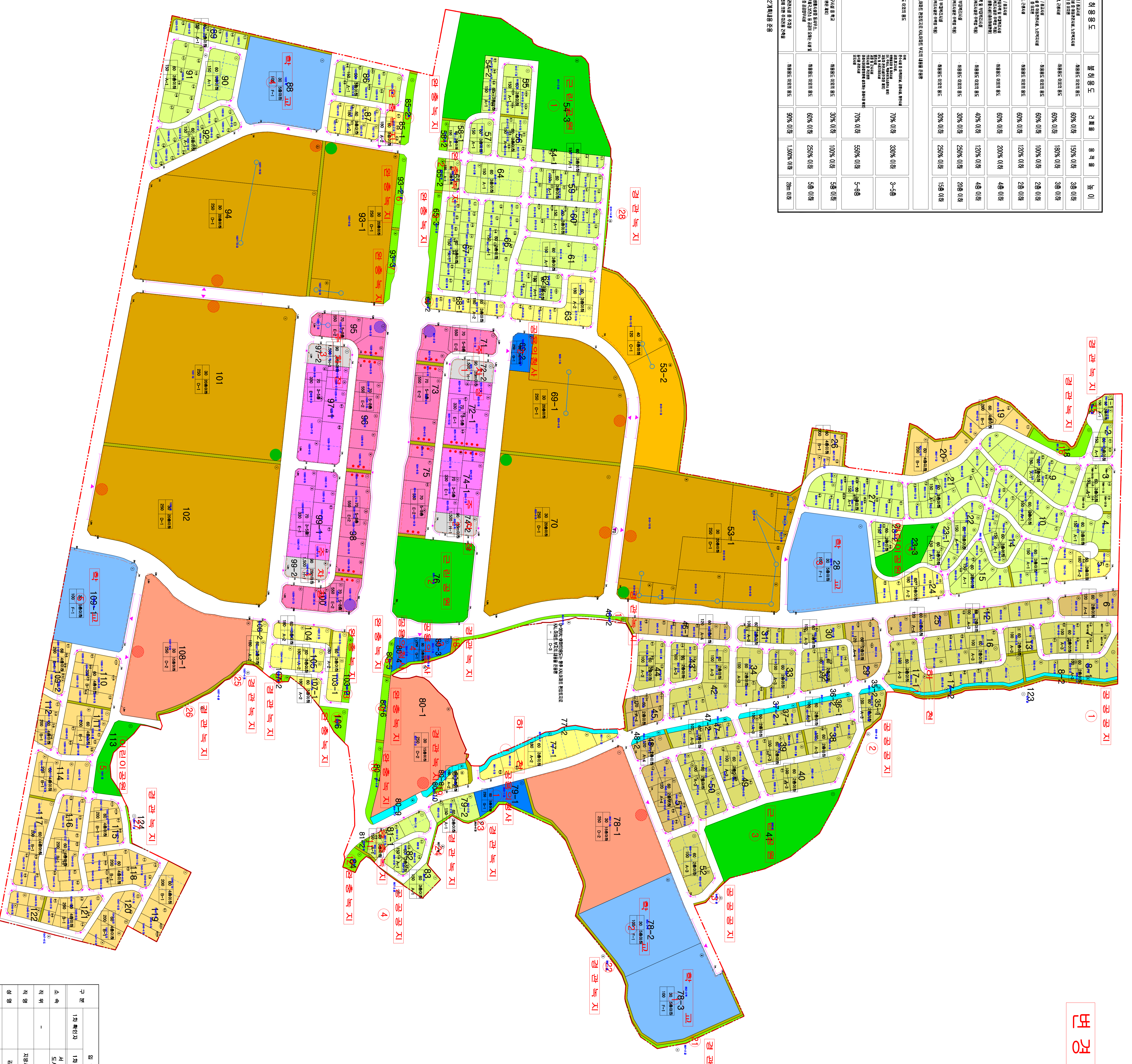
변경

지구단위계획 구역계	---
보행자 전용도로	———
공 원	■
학 교	■
공공의 청사	■
녹 지	■
공공공지	■
하 천	■
샘 지 공원	●
공동주택지내 분산상가	●
공 개 공 지 (파로타로 계획시 총 높이를 4m 이상)	●
치량출입허용구간	—▲—
치량출입불허구간	—×—
획지경계선	—
대지분할가능선(권장)	—
벽면 지정선 (1m-1층에 한함)	—●●●●—
공동건축 (권장)	—○—
건 폐 율	60 3 180 A-2
용 목적	높이(최고층수)
건축한계선	10m - 상임, 공공시설 : 1.0m 12m - 모든 용도 : 1.0m 17m - 모든 용도 : 1.0m 20m - 단독, 공공시설 : 1.0m 상임, 공동 : 1.5m 단, 학교시설은 3.0m 40m - 상임, 공공시설 : 3.0m



구분	용도	최용도	분리용도	건폐율	용적율	높이
A-1	단독 (18)	단독 (18)	연립 (18) 단독 (18)	60% 이하	150% 이하	38.0m
A-2	단독 (28)	단독 (28)	연립 (28) 단독 (28)	60% 이하	180% 이하	38.0m
A-3	단독 (18)	단독 (18)	연립 (18) 단독 (18)	60% 이하	100% 이하	28.0m
A-4	단독 (28)	단독 (28)	연립 (28) 단독 (28)	60% 이하	120% 이하	28.0m
B-1	단독주택 (33)	단독주택 (33)	연립주택 (33) 단독주택 (33)	60% 이하	200% 이하	48.0m
C-1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40% 이하	120% 이하	48.0m
O-1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30% 이하	250% 이하	28.0m
O-2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30% 이하	250% 이하	19.8m
O-3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30% 이하	250% 이하	19.8m
E-1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70% 이하	300% 이하	3-38
E-2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70% 이하	550% 이하	5-38
F-1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30% 이하	100% 이하	38.0m
G-1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60% 이하	250% 이하	38.0m
H-1	연립 (38)	연립 (38)	연립 (38) 단독 (38)	30% 이하	150% 이하	28.0m

※ 위와 다른 용도지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



구분	123 제정일	124 제정일	125 제정일	224 제정일
소속	시 구 정	시 구 정	시 구 정	시 구 정
적용	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
적용	지정시행규칙	지정시행규칙	지정시행규칙	지정시행규칙
성명	김종철	이성철	김종철	이성철
확인일				